

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(제40조의2제1항제3호 관련)

1.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

가. 설치위치

1) 너비 방향

가) 끝단표시등은 자동차의 최외측 끝에 설치할 것

나) 끝단표시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

2) 높이 방향

가)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(백색 끝단표시등)

(1) 기준축 방향에서 끝단표시등의 발광면 최상단은 앞면창유리 투명한 구역의 최상단보다 높게 설치할 것

(2) 피견인자동차는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차량 중앙 수직 종단면을 기준으로 좌·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

나)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(적색 끝단표시등)

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을 기준으로 좌·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

다) 추가로 설치되는 끝단표시등은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분리하여 설치할 것

3) 길이 방향

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뒷면에 인접하게 설치해야 하고 자동차 끝과의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

나. 관측각도

1) 외측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2) 상측 5도·하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다. 끝단표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앞·뒷면의 관측각도에 적합한 방향일 것

라. 작동조건

후미등·차폭등·옆면표시등·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

마. 표시장치

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.

바. 그 밖의 기준

1) 백색 및 적색 끝단표시등은 각각 설치하되,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

치로 결합될 수 있을 것

- 2) 끝단표시등과 차폭등 또는 후미등의 발광면 사이의 최단거리는 200밀리미터 이상일 것
- 3) 피견인자동차에 추가로 설치되는 백색 끝단표시등은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 관측 가능한 위치에 설치할 것
- 4) 백색 및 적색 끝단표시등이 동시에 작동되는 구조일 것

2. 끝단표시등의 광도기준

가. 최대 및 최소광도

구 분		최소광도 (칸델라)	최대광도(cd)	
			단일 등화	D-등화
끝단표시등(백색)		4 이상	140 이하	70 이하
끝단표시등(적색)	고정광도	4 이상	17 이하	8.5 이하
	가변광도	4 이상	42 이하	21 이하

주)

1. D-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.

가.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

나.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.

2.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끝단표시등을 의미한다.

3.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끝단표시등을 의미한다.

나.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

측정점 및 측정구역(각도)		광도(cd)
H	10L, 10R	1.4 이상
	5L, 5R	3.6 이상
	V	4 이상
5U, 5D	20L, 20R	0.4 이상
	10L, 10R	0.8 이상
	V	2.8 이상
10U, 10D	5L, 5R	0.8 이상
관측각도 범위 내		0.05 이상

주)

양산자동차 끝단표시등의 광도기준은 ±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. 다만,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.03cd 이상이어야 한다.